

용인시 기업 에스오에스(SOS)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08. 5. 9	조례 제 938호
개정	2010. 12. 17	조례 제1117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3. 3. 6	조례 제1273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4. 10. 6	조례 제1386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7. 5. 4	조례 제1653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7. 10. 2	조례 제1713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2018. 10. 16	조례 제1870호(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에스오에스(SOS)” 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업 에스오에스(SOS)”라 함은 관내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맞춤형 기업애로 처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
2. “관내기업”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용인시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3.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라 함은 시스템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소적 공간 및 인력을 말한다.
4. “기업현장 에스오에스(SOS) 기동반”이라 함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애로를 수렴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동조직을 말한다.
5.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업애로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의 정책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말한다.
6. “기업애로 원스톱 에스오에스(SOS) 처리회의”(이하 “원스톱 처리회의”라 한다)라 함은 기업애로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말한다.

제3조(기업 에스오에스(SOS) 지원센터) ① 시장은 시스템을 총괄하기 위

하여 기업지원과 내에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시장은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전담 조직을 둘 수 있다.

제4조(기업현장기동반) ① 시장은 기업애로를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기업현장기동반을 상시 운영한다.

② 기업현장기동반은 시 및 유관기관·단체가 합동으로 구성할 수 있다.

제5조(지원단) ① 시장은 시 및 유관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지원단을 운영한다.

② 지원단은 기관별 소관 기업애로에 대한 현장조사 및 처리방안 검토, 처리 등을 지원한다.

제6조(원스톱 처리회의) ① 시장은 기업애로 중 주요사안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원스톱 처리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일자리산업국장이 주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일자리산업국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 기업지원과장이 그 회의를 대행하여 주재할 수 있으며,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시장 또는 제1부시장·관계 공무원 등이 주재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17, 2013. 3. 6, 2014. 10. 6, 2017. 5. 4, 2017. 10. 2, 2018. 10. 16>

제7조(기업애로 발굴·처리) ① 시장은 기업현장 방문, 인터넷·전화상담, 기업인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도출하고 추진상황을 독려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유관기관·단체의 참여) ① 시장은 기업현장기동반, 지원단, 원스톱 처리회의의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단체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단체와 기업애로 해소 및 관련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기관 간 정보공유 및 처리능력 제고) ① 시장은 매년 지원단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기관 간 기업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애로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기업애로 처리에 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기업애로 해소에 기여한 공무원과 유관기관·단체 및 그 소속원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예산 확보) 시장은 매년 시스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17 조례 제1117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용인시 기업 에스오에스(SOS)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산업정책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⑤ 부터 ⑨ 까지 생략

부칙 <2013. 3. 6 조례 제127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용인시 기업 에스오에스(SOS)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

⑩ 부터 ⑮ 까지 생략

부칙 <2014. 10. 6 조례 제1386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용인시 기업 에스오에스(SOS)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기업지원과장”을 “투자유치과장”으로 한다.

⑨ 부터 ⑬ 까지 생략

부칙 <2017. 5. 4 조례 제165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용인시 기업 에스오에스(SOS)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투자산업국장”, “투자유치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7. 10. 2 조례 제171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⑯ 까지 생략

⑰ 「용인시 기업 에스오에스(SOS)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⑱ 부터 ㉓ 까지 생략

부칙 <2018. 10. 16 조례 제1870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용인시 기업 에스오에스(SOS)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투자산업국장”을 각각 “일자리산업국장”으로 한다.

③ 부터 ⑫ 까지 생략